

'26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의 융자금 지원(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지원제외 대상

- | | |
|---|--|
|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26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채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결정 불가 |
|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

3 지원금액 및 절차

- ✓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15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 전액 지원
- ✓ 지원절차



4 신청기간 및 방법

- ✓ 기간 : '26년 1월~재원 소진 시까지(5,386억원)
- ✓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매뉴얼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지원사업 신청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자료실
문의 1544-3088

5 지원품목

- ✓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 ✓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공단 및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6 필수사항

- ✓ 사업주교육 이수증 제출('23~'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비대면포함),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중 택1
- ✓ 기술지도 보고서 제출('25~'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민간기술지도 등



지원품목 확인하기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중소사업장의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사고사망을 예방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01 지원조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1. 뿌리공정 보유사업장*	2.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3. 상생협약 체결사업장	4.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사업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 주조 ▶ 소성가공 ▶ 표면처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중, ▶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 식품제조업(200) ▶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 금속제련업(21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활용기술이 주조, 소성, 표면처리로 표기된 사업장 |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원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1. 원청 직접지원	2.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3.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02 지원금액 및 절차

지원금액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급비율 (지급한도)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50% (1억원 한도)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 자부담 비용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신청가능(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지원절차



0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6.2.13 ~ 재원 소진 시까지('26년 재원 3,320억원)
-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특화 지원 (끼임·부딪힘) 안내



1 사업개요

-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래형 재해인 끼임·부딪힘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설비 비용을 지원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

3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90%), 당해연도 1회 지원)

- 지원절차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6. 2. 9.(월) ~ 재원 소진 시까지('26년 재원 334억원*) ※ 끼임 287억원, 부딪힘 47억원

-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특화 지원사업

자료실
문의 1544-3088

5 지원품목(QR참고)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등 끼임 재해예방품목 15종
- 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 등 부딪힘 재해예방품목 18종



지원품목 확인하기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

2 지원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50인 미만 중소기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지원제외 대상

- | | | |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 |
-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

3 지원금액 및 절차

- ✓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 ✓ 지원절차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 기간 : '26. 1. 2.(금) ~ 재원 소진 시까지('26년 재원 370억원)
- ✓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매뉴얼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지원사업 신청

안전일터 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료실
문의 : 1544-3088

5 지원품목

- ✓ 지정품목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등 35종
- ✓ 관리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 자율신청품목 : 지정·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한 사고 예방 기능·성능이 확인된 품목



지원품목 확인하기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지정품목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이동식
끼임·충돌 위험구역(건설업 본사)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ILO형



인공지능형

고위험기계설비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

인공지능(AI) 스마트 천장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음선·흔들림 방지장치)



천장주행크레인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비접촉 과속충돌방지장치)



고소작업대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 조끼



이륜차(배달, 택배업 등)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전도방지장치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충돌방지장치(부착형)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시스템



끼임 위험설비

봉괴면위험 경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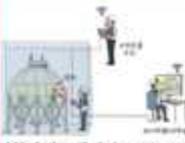
가시설·구조물(건설업 본사)

개구부 덮개 감지시스템



추락 위험장소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인화성 가스 감지기(고형식/이동식)



인공지능(AI) 화재감지기



인공지능(AI) 계속장치



화학물질 누액감지장치



방폭정전기 측정기(음선)



스마트 피난유도설비

화재·폭발·누출 위험장소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전력이상 감지장치
전 업종



아크제거장치
수배전반 보유



이동식 누설전류통제장치
건설업 본사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귀마개
소음작업(85dB 이상)



방진마스크
분진작업

근력보조슈트



근골격계 부담작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중량물 운반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치



밀폐공간
(화재·폭발장소 제외)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환기설비 통합시스템
화학공장 또는 실험·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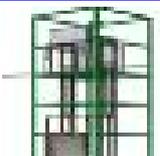
화학물질 노출정보 모니터링
유해물질 취급공장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ILO형 고위험기계설비  인공지능형 고위험기계설비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	인공지능(AI) 스마트 천장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음선, 흔들림 방지장치)  천장주행크레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전도방지장치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충돌방지장치(부착형)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	---

 <p>①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 <방호울, 라이트커튼 등></p>	 <p>②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 크레인 안전장치</p>
--	--

 <p>③ 산업용 리프트 교체</p>	 <p>④ 금형교환장치 <프레스, 사출성형기></p>	 <p>⑤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등></p>	 <p>⑥ 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 <프레스, 전단기></p>
 <p>⑦ 끼임방지 시설 <방호덮개, 컨베이어 안전장치 등></p>	 <p>⑧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방호울, 과부하방지장치 등></p>	 <p>⑨ 컨베이어 <고정식 컨베이어></p>	 <p>⑩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시저형 포함) <권과, 과부하방지장치 등></p>
 <p>⑪ 지게차-건설기계 충돌예방설비 <전후방카메라, 감지센서></p>	 <p>⑫ 건설기계(굴착기) 안전장치 <자동안전력커플러, AVM일체형></p>	 <p>⑬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설비, 지게차 안전장치</p>	 <p>⑭ 식품가공용기계 교체 <자율안전확인신고품></p>

 <p>① 전단기 및 절곡기</p>	 <p>② 롤러기</p>	 <p>③ 연삭기 및 연마기</p>	 <p>④ 파쇄기 및 분쇄기</p>	 <p>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p>	 <p>⑥ 페이지-플라스틱 압축기</p>
---	---	---	---	---	--